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품질시험소 포함) 소관의 예산안은 202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최종예산(b)	2026년도 예산안(c)	증 감 (c-b)	증 감 률 (%)
총 계		2,410	2,665	1,776	△889	△33.3
일 반 회 계	건설기술정책관	1,619	1,874	1,056	△818	△43.6
	품질시험소	791	791	720	△71	△8.9

나. 세 출 예 산 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최종예산(b)	2026년도 예산안(c)	증 감 (c-b)	증 감 률 (%)
계		7,322	7,921	6,668	△1,253	△15.8
일 반 회 계	건설기술정책관	5,782	6,381	5,319	△1,062	△16.6
	품질시험소	1,540	1,540	1,349	△191	△12.4

2. 회계별 예산 편성 현황

가. 세입예산안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2,410.9	2,665	1,775	△889	△33.3
건설기술정책관	계		1,619.6	1,873.7	1,054.5	△819.2	△43.7
	기타수수료		10.4	10.4	8.8	△1.6	△15.4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10.4	10.4	8.8	△1.6	△15.4
	기타과태료		353.7	353.7	327.4	△26.3	△7.4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82.0	82.0	90.1	8.1	9.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271.7	217.7	237.2	19.5	9.0
	지난년도수입		164.6	164.6	96.9	△67.7	△41.1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22.1	22.1	25.0	2.9	13.1
		지난년도 건설업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124.5	124.5	71.9	△52.6	△42.2
	증지수입		6.4	6.4	6.1	△0.3	△4.7
		일반건설업 등록신고 수수료	6.4	6.4	6.1	△0.3	△4.7
	과징금		322.9	322.9	412.1	89.2	27.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등	322.9	322.9	412.1	89.2	△27.6
	기타이자수입		1.8	1.8	9.1	7.3	405.6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반납이자	1.5	1.5	-	△1.5	순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자	-	-	-	-	-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자	0.3	0.3	-	△0.3	순감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반납이자	-	-	9.1	9.1	순증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2.1	32.1	56.2	24.1	75.1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30.2	30.2	-	△30.2	순감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1.9	1.9	-	△1.9	순감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	-	56.2	56.2	100
	국고보조금		745.7	999.8	138.4	△861.3	△86.2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03.7	131.2	128.4	△2.8	△2.1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0.0	10.0	10.0	-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07.0	533.6	-	△533.6	순감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325.0	325	-	△325	순감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품질시험소	계	791.3	791.3	720.5	△70.8	△8.9
	공유재산임대료	0.8	0.8	0.8	-	-
	청사 사용료 수입	0.8	0.8	0.8	-	-
	주차요금수입	12.2	12.2	11.8	△0.4	△3.2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12.2	12.2	11.8	△0.4	△3.2
	기타사용료	-	-	-	-	-
	청사 사용료 수입	-	-	-	-	-
	증지수입	774.8	774.8	703.6	△71.2	△9.1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707.1	707.1	637	△70.1	△9.9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1.8	1.8	2.2	0.4	22.2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65.9	65.9	64.3	△1.6	△2.4
	기타수수료	3.1	3.1	3.9	0.8	25.8
	수도미터 검사수수료 수입 등	3.1	3.1	3.9	0.8	25.8
	기타이자수입	0.4	0.4	0.4	-	-
	품질시험소 기타이자수입	0.4	0.4	0.4	-	-
	불용품매각대금	-	-	-	-	-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	-	-	-	-
	그외수입	-	-	-	-	-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	-	-	-	-

나. 세 출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7,322	7,921	6,668	△1,253	△15.8
건설기술정책관	계		5,782	6,381	5,319	△1,062	△16.6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소 계	1,489	1,489	1,167	△321	△21.6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04	504	506	2	0.4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04	504	506	2	0.4
		건설기술 향상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605	605	272	△333	△55
		건설기술 정보제공 및 직무교육	39	39	39	-	-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22	22	25	3	11.5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90	90	93	3	3.3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5	55	56	2	3.1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200	200	59	△141	△70.5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199	199	-	△199	순감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380	380	389	9	2.4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380	380	389	9	2.4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소 계	249	249	291	42	16.8
		건설정책 강화	249	249	291	42	16.8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63	63	63	-	0.7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24	24	59	35	146
		공정건설문화 정착	22	22	22	-	-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40	140	147	6	4.5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소 계	3,761	4,360	3,013	△1,347	△31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3,761	4.360	3,013	△1,347	△31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115	115	331	216	188.7
		민간 노후 안전취약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	1,212	1,212	1214	2	0.2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민간 안전취약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800	800	432	△368	△46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2	22	22	-1	△2.9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41	178	174	△4	△2.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58	58	39	△19	△32.9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0	10	10	-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53	253	248	△5	△2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500	863	-	△863	△100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650	650	306	△345	△53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	-	200	237	37	18.6
	재무활동	소 계	-	-	0.2	0.2	100
		보전지출	-	-	0.2	0.2	100
		국고보조금 반환	-	-	0.2	0.2	100
	행정 운영경비	소 계	282	282	283	1	0.5
		기본경비	282	282	283	1	0.5
		기본경비	282	282	283	1	0.5
품질시험소	계		1,540	1,540	1,349	△191	△12.4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소 계	1,137	1,137	949	△188	△16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1,137	1,137	949	△188	△16
		건설자재 품질시험	271	271	310	40	14.7
		품질시험장비 구입	563	563	324	△238	△42.4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304	304	314	11	3.6
	행정 운영경비	소 계	403	403	400	△4	△0.9
		기본경비	403	403	400	△4	△0.9
		기본경비	403	403	400	△4	△0.9

(2) 정책사업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심·매력 건설도시 서울 구현』 전략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계속사업 22개 및 신규사업 1개에 66억 6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계(25)	7,322	7,921	6,668	△1,253	△15.8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1,489	1,489	1,167	△322	△21.6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249	249	291	42	16.8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3,761	4,360	3,013	△1,347	△31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1,540	1,540	1,349	△191	△12

※ 성과지표 예산액은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재무활동(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제외한 금액임

1)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7개 사업(계속7)에 11억 6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비고
계(일반회계)		1,488,920	1,488,920	1,167,493	△321,427	
1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04,095	504,095	506,103	2,008	계속
2	건설기술 정보제공 및 직무교육	38,895	38,895	38,895	-	계속
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22,415	22,415	25,000	2,585	계속
4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90,000	90,000	93,000	3,000	계속
5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4,515	54,515	56,195	1,680	계속
6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200,000	200,000	59,000	△141,000	계속
7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380,100	380,100	389,300	-	계속

2)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등 4개 사업(계속4)에 2억 9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비고
	계(일반회계)	249,308	249,308	291,199	41,891	
1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62,928	62,928	63,396	468	계속
2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24,000	24,000	59,063	35,063	계속
3	공정건설문화 정착	22,000	22,000	22,000	-	계속
4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40,380	140,380	146,740	6,360	계속

3)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등 11개 사업(계속10, 신규1)에 35억원 7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비고
	계(일반회계)	3,761,251	4,360,844	3,576,619	△784,225	
1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114,680	114,680	331,047	216,367	계속
2	민간 노후 안전취약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	1,212,250	1,212,250	1,214,320	2,070	계속
3	민간 안전취약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800,000	800,000	432,235	△367,765	계속
4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2,278	22,278	21,629	△649	계속
5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40,965	178,109	174,437	△3,672	계속
6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58,000	58,000	38,900	△19,100	계속
7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0,000	10,000	10,000	-	계속
8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53,078	253,078	247,967	△5,111	계속
9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650,000	650,000	305,500	△344,500	계속
10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	-	199,839	237,000	37,161	계속
11	굴토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	-	-	563,584	563,584	신규

4)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 건설공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3개 사업(계속3)에 9억 4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비고
	계(일반회계)	1,136,770	1,136,770	948,980	△187,790	
1	건설자재 품질시험	270,691	270,691	310,419	39,728	계속
2	품질시험장비 구입	562,570	562,570	324,125	△238,445	계속
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303,509	303,509	314,436	10,927	계속

5) 기타 일반예산 관련

○ 건설기술정책관은 행정운영경비 6억 83백만원 및 재무활동으로 0.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법정경비 및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따라 편성한 것임.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비고
계(일반회계)		685,396	685,396	683,230	△2,166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685,396	685,396	683,209	△2,187	
1	기본경비(일반회계, 기술심사담당관)	188,653	188,653	189,108	455	계속
2	기본경비(일반회계, 건설혁신담당관)	61,692	61,692	62,298	606	계속
3	기본경비(일반회계, 지역건축안전센터)	31,711	31,711	32,139	428	계속
4	기본경비(일반회계, 품질시험소)	403,340	403,340	399,664	△3,676	계속
일반예산(재무활동)		-	-	21	21	
1	보전지출(일반회계, 지역건축안전센터)	-	-	21	21	신규

Ⅲ. 분야별 세부내용

가. 세입예산안

1) 일반회계

○ **건설기술정책관 소관(품질시험소 포함) 세입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임.**

【 건설기술정책관 】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43.6%인 8억 18백만원 감소한 10억 56백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기타수수료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9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25백만원
- 지난년도 건설업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72백만원

○ 기타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9천만원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2억 37백만원

○ 증지수입

- 일반건설업 등록신고 수수료 6백만원

○ 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등 4억 12백만원

○ 기타이자수입

-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9백만원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56백만원

○ 국고보조금

-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억 28백만원
-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천만원

【 품질시험소 】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8.9%인 7천1백이 감소한 7억 2천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임대료

- 청사 사용료 수입 1백만원

○ 주차요금수입

-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12백만원

○ 증지수입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6억 37백만원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2백만원
-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64백만원

○ 기타수수료

- 수도미터 검사수수료 수입 등 4백만원

○ 기타이자수입

- 품질시험소 기타이자수입 40만원

나.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 건설기술정책관 】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6.6%인 10억 62백만원 감소한 53억 19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5년도 대비 0.4%인 2천만원 증가한 5억 6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억 6백만원

○ 건설기술 향상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관련 예산은 2025년도 대비 55%인 3억 33백만원 감소한 2억 72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 정보제공 및 직무교육 3천9백만원
-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2천5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9천3백만원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천6백만원
-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5천9백만원

○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관련 예산은 2025년도 대비 2.4%인 3천5백만원 증가한 3억 9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3억 9천만원

○ 건설정책 강화를 위한 예산은 2025년도 대비 16.8%인 4천1백만원 증가한 2억 92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6천3백만원
-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5천9백만원
- 공정건설문화 정책 2천2백만원
-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억 5천만원

○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2025년도 대비 17.9%인 7억 8천만원 감소한 35억 7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1억 15백만원
- 민간 노후 안전취약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	12억 12백만원
- 민간 안전취약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4억 32백만원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천2백만원
-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억 74백만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3천9백만원
-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천만원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억 48백만원
-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3억 6백만원
- 굴토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	5억 64백만원

○ 기본경비는 2025년도 대비 0.53%인 1천4백만원 증가한 2억 84백만원임.

【 품질시험소 】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2.4%인 1천9백만원 감소한 13억 49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은 2025년도 대비 16%인 1억 88백만원 감소한 13억 4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자재 품질시험	3억 1천만원
- 품질시험장비 구입	3억 24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3억 14백만원

○ 기본경비는 2025년도 대비 0.9%인 4백만원 감소한 4억원임.

Ⅳ. 검토의견

1. 예산 개요

1) 총 괄
가) 세 입 : 전년대비 33.3% 감소한 17억 76백만원임
나) 세 출 : 전년대비 15.8% 감소한 66억 68백만원임
2) 일 반 회 계
【 건설기술정책관 】
가) 세 입 : 전년대비 43.6% 감소한 10억 56백만원임
나) 세 출 : 전년대비 16.6% 감소한 53억 19백만원임
【 품질시험소 】
가) 세 입 : 전년대비 8.9% 감소한 7억 2천만원임
나) 세 출 : 전년대비 12.4% 감소한 13억 49백만원임

○ 2026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관(품질시험소 포함)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은 전년대비 33.3% 감소한 17억 76백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대비 15.8% 감소한 66억 68백만원으로,

- 세입의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회계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주택사면 재평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등 국고보조금 미편성 등에 기인한 것임.

○ 다음으로, 세출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정책관 정책분야별 예산 변동추이(아래 [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최종예산 대비 약 76.2%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정책관 정책사업목표별 예산 변동 추이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2026 예산안		2025년 예산		2024년 예산	
	예산액	구성비(%)	최종예산액	구성비(%)	최종예산액	구성비(%)
계	5,820	100.0	7,638	100.0	6,687	100.0
건설공사 수준 향상 및 기술역량 배양	1,167	20.1	1,489	19	907	13.6
사람중심의 건설환경 조성	291	5.0	249	3	592	8.9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3,013	51.8	4,360	57	4,088	61.1
건설공사 및 계량기 품질수준 향상, 계량기 검사 신뢰도 확보	1,349	23.2	1,540	20	1,100	16.4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굴토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 사업이 신규로 5억 64백만원 편성되었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3억 31백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신설·증액된 사업도 있으나,

- 지난해 한시적으로 추진하였던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용역비 1억 99백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8억 63백만원 등이 종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2억 53백만원 수준의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분야별 검토 의견

가. 세입 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2,410.9	2,665	1,775	△889	△33.3
건설기술정책관	계		1,619.6	1,873.7	1,054.5	△819.2	△43.7
	기타수수료		10.4	10.4	8.8	△1.6	△15.4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10.4	10.4	8.8	△1.6	△15.4
	기타과태료		353.7	353.7	327.4	△26.3	△7.4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82.0	82.0	90.1	8.1	9.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271.7	217.7	237.2	19.5	9.0
	지난년도수입		164.6	164.6	96.9	△67.7	△41.1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22.1	22.1	25.0	2.9	13.1
		지난년도 건설업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124.5	124.5	71.9	△52.6	△42.2
	증지수입		6.4	6.4	6.1	△0.3	△4.7
		일반건설업 등록신고 수수료	6.4	6.4	6.1	△0.3	△4.7
	과징금		322.9	322.9	412.1	89.2	27.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등	322.9	322.9	412.1	89.2	27.6
	기타이자수입		1.8	1.8	9.1	7.3	405.6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반납이자	1.5	1.5	-	△1.5	순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자	-	-	-	-	-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자	0.3	0.3	-	△0.3	순감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반납이자	-	-	9.1	9.1	순증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2.1	32.1	56.2	24.1	75.1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30.2	30.2	-	△30.2	순감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1.9	1.9	-	△1.9	순감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	-	56.2	56.2	100
	국고보조금		745.7	999.8	138.4	△861.3	△86.2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03.7	131.2	128.4	△2.8	△2.1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0.0	10.0	10.0	-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07.0	533.6	-	△533.6	순감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325.0	325	-	△325	순감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품질시험소	계	791.3	791.3	720.5	△70.8	△8.9
	공유재산임대료	0.8	0.8	0.8	-	-
	청사 사용료 수입	0.8	0.8	0.8	-	-
	주차요금수입	12.2	12.2	11.8	△0.4	△3.2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12.2	12.2	11.8	△0.4	△3.2
	기타사용료	-	-	-	-	-
	청사 사용료 수입	-	-	-	-	-
	증지수입	774.8	774.8	703.6	△71.2	△9.1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707.1	707.1	637	△70.1	△9.9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1.8	1.8	2.2	0.4	22.2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65.9	65.9	64.3	△1.6	△2.4
	기타수수료	3.1	3.1	3.9	0.8	25.8
	수도미터 검사수수료 수입 등	3.1	3.1	3.9	0.8	25.8
	기타이자수입	0.4	0.4	0.4	-	-
	품질시험소 기타이자수입	0.4	0.4	0.4	-	-
	불용품매각대금	-	-	-	-	-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	-	-	-	-
	그외수입	-	-	-	-	-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	-	-	-	-

1) 『건설기술정책관』

(1)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세입예산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감리) 변경신고를 지연한 자[1]와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2]에게 부과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는 과태료로, 금회 전년대비 808만원(9.9%)이 증가한 9,013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변경신고 지연('22~'25년 평균, 60건) 및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22~'25년 평균, 360건)의 평균 부과 건수에 평균 징수율 89%를 반영하여 산출([표] 참조)한 것이기는 하나. 연도별 과태료 적발건수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 2026 세입추계 : 90,125천원

- 산출내역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변경신고지연 과태료** : 60건×370,000원=**22,200,000원**

⇒ '26년 예상 부과건수 : 60건('22~'25. 4월 부과건수 평균)

⇒ '26년 예상 평균부과금액 : 370,000원

‣ '22.~'25.4월 건당 평균 부과금액 = 76,365천원/206건 = 370천원

•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 360건×212,000원×89%=**67,924,800원**

⇒ '25년 예상 부과건수 : 360건('22. 8월~'25. 4월까지 월평균 30건)

⇒ 평균 부과금액 : 212,000원('22. 8월~'25. 4월까지의 평균 부과금으로 산정)

⇒ **징수율 : 89%**('22. 8월~'25. 4월까지의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으로 산정)

[표] 최근 4년간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예산편성에 따른 결산내역

(단위 :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4월)	결산전망	
38,613	36,857	39,990	79,256	81,479	90,727	82,045	42,011	102,094	90,125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부터 기술인력,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 규정된 제반 사항의 신고 지연에 따른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에 따른 것으로 이해됨.

○ 한편, 과태료 세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법령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위반 감소를 위한 안내·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보임.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등

○ 동 세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4]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 대비 8,926만원(27.6%)이 증가한 4억 1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25년 전망액을 포함한 최근 5개년('21년~'25년, 최대·최소 제외) 평균 부과액 5억 66백만원에 평균 징수율 72.8%를 반

---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11. (생 략)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정액 기준 예>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징금		
경력증 등 대여	4,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부당특약 강요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정률 기준 예>

위반행위	도급금액에 따른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무등록자 하도급	24	18	12	8
직접시공 의무위반	24	18	12	6

영하여 추계([표] 참조)함에 따른 것으로,

[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산출근거

□ 2026 세입추계 : 412,176천원

- 산출내역
  - 25년 전망 포함한 최근 5개년('21년~'25년 최대·최소 제외) 평균 부과액에 평균 징수율 반영하여 추계

    ⇒ 412,176천원 = **566,177천원**(최대·최소 제외 5년 평균 부과액) × **72.8%**(최대·최소 제외 5년 평균 징수율)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1~'25년 평균(최대, 최소 제외)
					4월기준	전망	
부 과 액	354,652	1,281,922	436,746	408,063	587,176	853,723	**566,177**
징 수 액	314,651	967,610	295,699	307,121	311,456	515,338	379,037
징수율(%)	88.7	75.4	67.7	75.3	53.0	60.4	**72.8**
부과액증감률(%)	173.7	261.4	-65.9	-6.6	-	109.2	92.1

○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부터 체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계획을 병행하고, 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분할납부 유도 등 징수율 제고 방안을 구체화하여 세입 추계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3)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 동 세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5]와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56조[6]에 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6)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재난예방조치)**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주택건축분야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예방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했던 보조금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 수입으로, 금회 전년 대비 2,411만원(75.2%)이 증가한 5,620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입추계는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간 반환율 감소추세를 고려하여 '25년도 예산액에 최근 반환율 3.6%를 반영한 720만원을,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반환율 4.9%를 반영하여 4천9백만원을 산출한 것임.

[표]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산출근거

□ 2026 세입추계 : 56,200천원

- 산출내역 : 7,200천원(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49,000천원(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①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2023	2024	2025
교부액(천원)	73,573	144,958	189,520
집행잔액(천원)	21,463	14,315	6,759
반환율	29.1%	9.8%	3.6%

• 집행잔액이 일정치 않고 최근 3년간 반환율이 감소 추세임을 반영하기 위해 '25년 반환율과 동일 반환율로 추계함

• 200,000천원('25년 예산액) × 3.6%('25년도 반환율) = **7,200천원**

②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2023	2024	2025
교부액(천원)	3,000,000	3,000,000	3,000,000
집행잔액(천원)	147,926	200,726	93,337
반환율	4.9%	6.7%	3.1%

• 집행잔액이 일정치 않아 최근 3년간('23~'25년) 평균반환율로 추계함

• 1,000,000('25년 예산액) × 4.9%(최근 3년간 평균반환율) = **49,000천원**

제5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동 세입은 본질적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액을 의미하는 만큼, 단순한 세수 확보 관점보다는 보조사업 집행률 제고와 불용 최소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바,

- 향후 예산편성 시 자치구별 수요와 집행 여건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교부 규모를 적정화하고,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2) 『품질시험소』

(1)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외 2개 증지수입

○ 동 증지수입은 품질시험소의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7], **'택시미터검정 수수료'**[8], **'각종 계량기 검사 수수료'**[9]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 대비 7,122만원(△9.2%)이 감소한 7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 사유는 품질시험소 증지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를 전년 대비 7,510만원(△9.9%) 감소한 6억 4백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 건설공사 품질점검 건수가 '23년 180건에서 '25년 130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편성([표] 참조)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과 건설경기의 변동성이 커 세입 규모

---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8)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자.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제7호서식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 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주행 검정거리가 매 1㎞초과 시 마다) ※ 단, 1㎞미만은 1㎞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1대	600원

9) **「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품질시험소는 연도 중 징수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건설공사 품질점검 및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요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입추계의 현실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표]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산출근거

□ 2026 세입추계 : 637,066천원

- 산출내역 : (건설공사 품질점검)163,876천원 + (건설자재 품질시험)473,190천원 = 637,066천원
- (건설공사 품질점검) 2026년 추계액: 163,876천원
  - 점검대상 공사장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5년 전망치 포함한 3개년('23~'25년) 품질점검 건수 증감률의 평균치(△11.8%)를 반영하여 산출
    -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 78개소
      ⇒ 78건 × 1,788,140원 = 139,474,920원
    -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 40개소
      ⇒ 40건 × 610,020원 = 24,400,800원

<최근 3년간 연도별 품질점검 건수>

(단위 : 건)

구분	2023	2024	2025(전망)	2026(추정)
계	180	162	134	118
적절성 확인	92	86	89	78
이행 확인	88	76	45	40
증감률	△8.2	△10	△17.3	△11.8

※ 향후 市산하·투자기관 및 區에서 품질점검 추가 의뢰 시 전망액 증가 가능

- (건설자재 품질시험) 2026년 추계액: 473,190천원
  - 총징수액: 1,676건 × 282,333원 = 473,190천원
    ⇒ '26년 예상 징수건수: '25년 전망치를 반영한 최근 5년('21~'25년) 평균 건수인 1,676건 적용
    - '21년 1,501건, '22년 1,696건, '23년 1,857건, '24년 1,652건, '25년 1,674건
      ⇒ '26년 예상 건당단가: '25년 전망치(276,797원/건)에 '24.5.~'25.4. 기준 전년대비 평균 물가상승률(2.0%) 적용
    - 276,797원/건 × 1.02 = 282,333원/건

나. 세출 예산안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7,322	7,921	6,668	△1,253	△15.8
건설기술정책관	계		5,782	6,381	5,319	△1,062	△16.6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소 계	1,489	1,489	1,167	△321	△21.6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04	504	506	2	0.4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04	504	506	2	0.4
		건설기술 향상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605	605	272	△333	△55
		건설기술 정보제공 및 직무교육	39	39	39	-	-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22	22	25	3	11.5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90	90	93	3	3.3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5	55	56	2	3.1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200	200	59	△141	△70.5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199	199	-	△199	순감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380	380	389	9	2.4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380	380	389	9	2.4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소 계	249	249	291	42	16.8
		건설정책 강화	249	249	291	42	16.8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63	63	63	-	0.7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24	24	59	35	146
		공정건설문화 정착	22	22	22	-	-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40	140	147	6	4.5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소 계	3,761	4,360	3,013	△1,347	△31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3,761	4.360	3,013	△1,347	△31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115	115	331	216	188.7
		민간 노후 안전취약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	1,212	1,212	1214	2	0.2
		민간 안전취약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800	800	432	△368	△46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2	22	22	-1	△2.9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41	178	174	△4	△2.1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58	58	39	△19	△32.9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0	10	10	-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53	253	248	△5	△2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500	863	-	△863	△100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650	650	306	△345	△53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	-	200	237	37	18.6
	재무활동	소 계	-	-	0.2	0.2	100
		보전지출	-	-	0.2	0.2	100
		국고보조금 반환	-	-	0.2	0.2	100
	행정 운영경비	소 계	282	282	283	1	0.5
		기본경비	282	282	283	1	0.5
		기본경비	282	282	283	1	0.5
품질시험소	계		1,540	1,540	1,349	△191	△12.4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소 계	1,137	1,137	949	△188	△16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1,137	1,137	949	△188	△16
		건설자재 품질시험	271	271	310	40	14.7
		품질시험장비 구입	563	563	324	△238	△42.4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304	304	314	11	3.6
	행정 운영경비	소 계	403	403	400	△4	△0.9
		기본경비	403	403	400	△4	△0.9
		기본경비	403	403	400	△4	△0.9

1) 『건설기술정책관』

(1)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사업별설명서 P.22)

○ 동 사업은 건설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안전성, 적정성, 설계경제성(VE) 등을 심의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01만원(0.4%)이 증가한 5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2025년도 및 2026년도 건설 기술심의회 세부예산(안)

(단위:천원)

사 업 명		2025년 (A)	2026예산(안) (B)	증감(B-A)	(B-A)*100/A (%)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504,095**	**506,103**	2,008	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401	25,109	708	3
	사무관리비	367,740	371,240	3,500	1
	공공운영비	2,000	0	△2,000	△100
	국외업무여비	20,000	20,000	0	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8,370	18,370	0	0
	특정업무경비	60,024	60,024	0	0
	행사실비지원금	7,560	7,560	0	0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3,800	△200	△5

○ 서울시는 동 사업 예산을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0.4%증가)으로 편성하였는데, 최근 4년간 건설기술심의회 개최 횟수가 '21년 280건에서 '24년 34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표] 참조),

[표] 최근 5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25.10.31. 기준, 단위: 건수)

연도	합계	용역발주 심의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심의	입찰방법 심의	입찰 안내서 심의	설계 심의	설계 경제성 검토	설계적격 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	정밀안전 진단심의	설계심의 이행관리 확인	계약분쟁자문
'21년	**280**	74	1	1	2	63	31	6	4	10	88	-	-
'22년	**321**	88	-	3	4	57	42	8	13	21	76	8	1
'23년	**324**	95	3	8	6	64	34	4	20	21	69	-	-
'24년	**343**	114	2	4	6	50	18	8	26	29	83	3	-
'25년	**241**	66	2	2	1	54	28	6	10	11	60	1	-

- 특히 용역발주심의 건수가 같은 기간 74건에서 114건으로 증가하는 등 서울시의 용역 건수 증가로 인한 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예산편성은 증가한 업무량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에는 증가 추세에 있는 심의 건수와 용역발주 규모, 설계경제성(VE) 검토 및 설계심의 이행관리 등 추가적인 역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심의 수요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사업별설명서 P.47)

○ 동 사업은 스마트 건설의 핵심기술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10] 데이터를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실정에 부합하는 BIM 성과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920만원(2.4%)이 증가한 3억 8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18.10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2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처(지자체)에게 사업유형 및 특성에 맞는 'BIM 적용지침' 수립을 의무화[11]한 데 이어, '22.7월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을

10)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건설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체계

수립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표] 참조),

[표] BIM 지침 수립단계(국토부 지침)

국토교통부			발주처(지자체)		
BIM 기본지침		BIM 시행지침	분야별 적용지침		분야별 실무요령
건설산업 BIM 최상위 지침	⇒	발주자, 설계사, 시공사 적용 세부기준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 세부적용지침	⇒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 요령, 해설서
(2020년 수립)		(2022년 수립)	(2023~2024)		(2023~2024)

- 서울시는 ’23.4월부터 ’24.10월까지 ‘서울시 BIM 적용지침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에 부합하는 ‘BIM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5년부터 14개월간 추진 중인 ‘서울시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용역의 2차 연도 소요 재원이 필요하여 금회 편성한 것임.

○ 동 용역을 통해 마련될 ‘서울시 BIM 성과품 관리방안 시스템’([표] 참조)은 향후 서울시가 발주하는 도로·철도·건축 등 각 분야 사업에서 생산되는 BIM 성과품을 일원화된 기준에 따라 납품·검수·축적·활용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1)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20.12.)
제2장 BIM 적용절차 및 기준 중 2.3. 성과품 관리
(1)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개요
- 설계 및 시공단계 종료 후 최종 발주처에 납품된 BIM 성과품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BIM 데이터를 추출 및 가공하여 BIM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있어야 한다.
(2)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마련 및 운영
- 각 발주처는 납품된 BIM 성과품 일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자체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며, 자체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마련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인력(조직)을 확보하여 조기에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표] BIM 성과품 관리방안 시스템 개요

○ 다만,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단순 시스템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축적과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를 위해 민간에서 그동안 보유해 온 BIM관련 데이터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3)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사업별설명서 P.58)

○ 동 사업은 서울시 종합건설업의 등록·관리를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3,506만원(146.1%)이 증가한 5,906만원을 편

성하였음.

○ 금회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기존에 서울시가 5억원 이상의 발주공사에 대해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만을 중심으로 부적합 건설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점검하던 방식[12]에서,

- '25.5월 수립한 '건설업등록기준 전수조사 계획'[13]에 따라 서울 소재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전체([표] 참조)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자, 단속요원 확보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8개월분, 3,056만원) 등 현장 조사 인력·운영비를 신규로 반영함에 따른 것임.

[표] 서울시 소재 건설업체 현황 ('25.3월 기준)

○ 종합건설업체 : 2,744개

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업종수	업체수						
3,075	2,744	367	2,134	276	31	189	78

○ 전문건설업체 : 12,380개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습식	조경·시설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비계
1,402	3,371	1,083	1,258	582	549	810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기계가스	가스난방
1,287	21	151	27	154	1,486	3,060

○ 그동안 서울시는 부적합 건설사업자로 추정되는 업체가 5억원 이하 공사, 자치구 발주공사 등으로 우회하여 입찰하는

12) 서울시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합 건설사업자 점검 현황
- (조사대상) 시 발주공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 (실시기간) 2020년 2월~ 현재
- (조사건수) 1,265건 조사, 219건 부적합 판정

13) **'건설업등록기준 전수조사 계획'**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7626 (2025.5.19.)

경우를 충분히 걸러내기 어려웠고, 지속적인 조사에도 등록기준 미달 업체가 매년 반복 발생([표] 참조)하는 한계가 있었던바,

- 금회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부적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표] 5억원 이상 발주공사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조사 현황

구분	조사 건수	처분 의뢰 (처분율)	처분완료						처분 진행중
			소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록말소	
계	1,265	219	193	185	2	2	3	1	26
'24년	311	51(16.4%)	28	28					23
'23년	331	39(11.8%)	36	36					3
'22년	359	84(23.4%)	84	82			2		
'21년	154	22(14.3%)	22	18	2	2			
'20년	110	23(21%)	23	21			1	1	

○ 또한, 건설업계에서 부적합 건설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동 사업을 단년도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표] 서울시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과정

빅데이터 의심업체 추출 → 조사대상 업체선정 → 합동조사 실시 (건설혁신담당관, 건설협회) → 부적합시 행정처분 (3개월 종료일 기준 미보완시)

(4)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사업별설명서 P.70)

○ 동 사업은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가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대처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2억 16백만원(188.7%) 증가한 3억 3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된 증액 사유는 지역안전센터 내에 혼재되어 있던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기능을 사업 성격에 따라 재분류([표] 참조)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점검 분야의 '중소형 위험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세부사업을 동 사업으로 이관·편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치구 보조금 예산 1억 92백만원을 새롭게 반영함에 따른 것임.

[표] 지역건축안전센터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점점검 재분류('25년→'26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변경	'25년 (구) 사업내용	'26년 (신) 사업내용
('25년) 민간건축공사장 및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점검 → ('26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민간공사장 하도급 지원 자문수당 등 (8,500)	민간공사장 하도급 자원 자문수당 등 (8,500)
		민간건축공사장 하도급 점검 수당 (77,700) 신규
	민간건축공사 취약시기 안전점검 (43,800)	민간건축공사 취약시기 안전점검 (52,417)
	안전취약 건축물 일괄 안전점검 (23,580)	중소형 위험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192,430)
	민간건축공사 건축물 등 특별점검 (16,800)	
	철근탐지기 구매(22,000) 완료	
	114,680	331,047(216,367)
('25년)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 ('26년) 민간 안전취약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임의관리대상 민간전축물 직권 안전점검 (542,000)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385,670)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36,000)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25,475)
	중소형 위험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222,000)	안전취약 건축물 및 주택사면 안전점검 (19,240)
		민간건축물 등 특별점검 (1,850)
	800,000	132,235(△367,765)

○ 동 사업 재분류는 서울시가 '25.2월 수립한 '2025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14]에 따라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1,344개소에 대한 취약시기별 정기·특별점검과, 해체·굴토·가시설 등 위험공종 중심의 중소형 공사장 3,717개소 점검을 통해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 '24년 한 해 동안 민간건축공사장 관련 인명피해가 239명(사망 10명, 부상 229명) 발생([표] 참조)하는 등 중대재해 사고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실태점검 강화와 위험 집중점검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음.

[표] '23년~'24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현황

(`24.12월 기준)

	계	추락	화재	붕괴	전도	낙하	감전	기타	인명피해 (사망/부상)
합계	317	145	3	4	11	24	3	127	649명(89/560)
2024년	214	94	2	1	9	12	3	93	239명(10/229)
2023년	103	51	1	3	2	12	-	34	109명(16/93)

○ 따라서, 금회 개편하려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이전 연도의 '민간건축공사장 및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점검' 세부사업에서 공사장 분야를 분리·확대하고,

- 대형·중소형 공사장 전반을 포괄하는 안전점검·하도급 점검 등을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동 사업 자체는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시비3:구비7)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률과 점검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임.

14) **'2025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1889 (2025.2.12.)

(5) 굴토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사업별설명서 P.109)

○ 동 사업은 서울시 및 자치구 관할 민간 굴토공사장([표] 참조)을 대상으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및 흙막이벽체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토안전점검단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금회 신규로 5억 6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서울시 및 자치구 관할 민간 굴토공사장 현황

○ 민간 건축공사장 3,449개소 중 현재 굴토공사 중 공사장 238개소

('25.6.30. 기준)

구분	계	대형 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중소형 공사장		
		소계	건축허가	정비사업	소계	중형	소형
전체 (굴토공사 중)	3,449 (238)	332 (58)	227 (33)	105 (25)	3,117 (180)	583 (34)	2,534 (146)

○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서울시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은 특급기술자 2인 투입을 전제로 연간 58개소를 대상으로 1일 2.5개소, 연 8회 점검하는 것으로 1억 37백만원을 산정하였고,

- 자치구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역시 특급기술자 2인, 연간 180개소, 1일 2.5개소, 연 8회 점검 기준으로 4억 26백만원을 산정하였음([표] 참조).

[표] 굴토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 '26년 예산 편성내역

과목구분	2026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ㅇ 서울시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특급기술자 370천원*2명*연간 58개소/2.5개소*8회 = 137,344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자치구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특급기술자 370천원*2명*연간*180개소/2.5개소*8회 = 426,240천원

○ 동 사업은 ’25년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등 도심지 굴토공사장에서 연이은 안전사고와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서 굴착공사장에 대한 지반침하 방지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서울시 안전관리 특별대책 회의(’25.4월) 및 안전대책 합동회의(’25.7월)를 통해 굴토안전점검단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굴토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대형·중소형 공사장에 대한 매월 1회(연 8회) 상시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토질·기초·건축구조·건설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2인 이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려는 것임([표] 참조).

[표]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추진계획

ㅁ 굴토공사장 점검 횟수 확대 실시로 안전점검 관리 극대화

ㅇ 현재 분기별 점검 ⇒ **매월 상시점검으로 점검횟수 확대 실시**

- 굴토공사 단계별 위험요인 상시 확인을 통해 안전점검 관리체계구축
- 지반침하 및 흙막이벽체 붕괴 등 이상징후 조기발견으로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굴토공사장 점검시기 개선안

구분	2025년 굴토공사장												2026년 굴토공사장											
(대형) 점검시기	해빙기 등 취약시기 연 4회 *해빙기(2~3),우기(5~6),태풍(8~9),겨울철(11~12)												**매월 점검실시(연간12회)** * ‘26.01.01~’26.12.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소형)점검시기	굴토, 가시설 등 위험공종 작업 시 * 대상별 연 3회 점검으로 기 예산 편성												**매월 점검실시(연간12회)** * ‘26.01.01~’26.12.12.31											

※ **굴토안전점검단 예산 8개월분 반영**으로 **4개월분**에 대해서는 중소형 공사장 예산 활용 병행 추진하여 매월점검 실시위한 세부계획 수립 예정 임.

○ 이는 지반침하 및 흙막이 붕괴 등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신규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하다 사료됨.

○ 다만, 서울시는 금회 예산에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을 연 8개월분만 반영하여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편성하였는데,

- 당초 상시(12개월) 점검 실시 계획에 비추어 보면 사업 기간과 범위가 축소된 측면이 있어, 현장 점검체계를 연중 상시로 가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과 대상·범위가 일부 중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두 사업 간 역할과 점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점검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표] 굴토공사장 지반침하 등에 따른 대응체계

ㅇ 굴토공사장 굴토안전점검단 안전점검 실시 중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등 이상징후 발생시 市 지하안전과 연계 지하물리탐사(GPR 등)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

※ 굴토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등 이상징후 시 대응체계

변위량 등 계측	굴토공사장 안전점검실시	지반침하 등 이상징후발견	지하안전과 상황전파	GPR탐사 등 실시	결과 확인 후 수습복구계획

2) 『품질시험소』

(1) 품질시험장비 구입(사업별설명서 P.120)

○ 동 사업은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품질시험소의 시험능률을 향상시키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금회 전년대비 2억 38백만원(△42.4%)이 감소한 3억 2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 사유는 서울시가 '시험장비 관리 5개년 계획('25~'29년)'을 수립([표] 참조)하고 연차별로 토질·재료·화학분야의 장비 47대를 단계적으로 교체·보강하는 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금회는 동 계획에 따른 '26년도 집행분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표] 시험장비 관리 5개년 계획('25년~'29년)

□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사업기간 : 2025. 1. ~ 2029. 12.(5개년)

□ 추진방향

○ 시험 결과의 정확도 향상 및 시험 능률 제고를 위해 최신 장비 확보
- 장비 내구연한 경과 시 교체하는 것을 원칙
- 장비 상태(양호, 불량)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

○ 유사시에도 시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가급적 대체장비 확보
- 대체장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활용하여 예비로 확보 원칙
- 시험 항목 추가 및 시험량 증가 등의 경우 장비 추가 확보

□ 연도별 시험장비 구매 계획

(단위: 대/천원)

구 분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47대	12대	12대	10대	8대	5대
	1,541,429	659,400	289,505	261,792	109,437	221,295
토질재료 시험과	25대	3대	5대	8대	5대	4대
	965,007	257,550	200,058	225,565	74,948	206,886
화학 시험과	22대	9대	7대	2대	3대	1대
	576,422	401,850	89,447	36,227	34,489	14,409

☐ 행정사항
ㅇ 내구연한 경과 장비 등 시험장비의 상시적 기능유지를 위한 장비 점검 및 정비 시행 - 향후 잦은 고장 등 장비의 가동상태 등을 감안하여 확충 계획 조정 ㅇ 시험장비 관리 및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 연차별 반영

○ 현재, 서울시 품질시험소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15] 및 「국가표준기본법」[16]에 따른 공인 시험기관으로 보유 중인 시험장비 242대 중 78대(32.2%)가 내구연한을 경과하는 등 노후율이 높아 장비 교체가 시급한 상황임([표] 참조).

[표] 품질시험소 시험 장비 보유 현황

2025.9.30. 기준
ㅁ 품질시험소 시험장비 보유현황 : 총 93종 **242대** - 토질재료시험 분야 41종 146대, 화학시험 분야 52종 96대 - 총 93종 **242**대의 시험 장비 보유 중. - 그 중 **32.2%인 78대의 장비가 내구연한 초과** -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는 8대**

○ 한편, 주요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품질시험 장비 구입비 1억 44백만원과 전기차 충전기 검정장비 구입비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시험장비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시험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큰 장비를 중심으로 교체하고자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16)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험 중단 위험을 줄이고 대체장비 확보를 통해 시험의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의 경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17]에 따라 서울시 품질시험소가 전기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장검정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음([표] 참조).

[표] '26년 전기차 충전기 점검장비 구매 계획

○ 전기차 충전기 검정장비 주요 구매사양 비교

구 분		'25년 구매 규격	'26년 구매 계획
급속 충전기 검정 사양	전 압	1,000V	1,000V
	전 류	200A	400A
	전력량	200KW	400KW

- 전기차충전기는 대용량(350KW)의 급속충전기로 확대중이므로 400KW급의 검정장비 필요
  · (버스업계) 국내 운용중인 EV버스의 고속충전을 위하여, 급속충전기 설치대수 증가
  · (충전사업자)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충전시간 축소를 위하여 전기차 충전기의 사양이 지속적으로 대용량의 급속충전기로 확대되는 추세임

○ 전기차 충전기 검정장비 사진

17)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①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 다만, 시험장비 노후율이 여전히 30%대 수준으로 높은 것과 전기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의무화에 따른 수요가 증가([표] 참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표] 서울시 관내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발생 건수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5. 9월
건 수	77	1	1	4	40	31

- 시험장비 교체 계획에 따른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장비의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 검정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비 도입 시기와 필요예산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명시이월 : 없 음